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제안요청서 -

2022. 3.

국 토 교 통 부
첨 단 물 류 과

〈 목 차 〉

I . 과업의 개요	1
II . 주요 과업내용	3
III . 과업 수행지침	7
IV . 보안대책	12
V . 예정공정표	14
VI . 제안관련 사항	15
1.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5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16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18

붙임 : 제안서 양식(서식 1 ~ 서식4)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 용역비 : 일금 1억원정 (₩100,000,000, 부가세 포함)
3. 과업의 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이후 국가, 경제, 사회의 다양한 변화 및 상황을 반영하여 물류시설정책의 새로운 변화 모색 필요
 - 물류시설정책은 해운·항만과 항공·도로·철도의 분야별 전문성 제고와 동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 물류거점시설 개발과 효율적 운영체계 전환을 통하여 물류시설 조성 및 운영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통합 물류네트워크 구현 필요
 - 세계 교역시장의 구조적 변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개발 수요 증대
 - 전자상거래 확산, 새로운 융복합 산업 대두, 물류 신기술 개발, 인구 고령화 등 새로운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물류시설 전략 필요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제4차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물류시설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
 -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물류네트워크의 변화를 반영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상호협력 및 효율성 강화 필요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각종 통계 등의 기초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활용하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능한 최근 자료를 활용
 - 목표연도는 2023년부터 시작하여 최종 2027년으로 설정
- 공간적 범위
 - 지역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분석을 위하여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상세 분석 수행
 -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물류시설의 위계별 정의(단위물류시설, 집적물류시설, 연계물류시설)을 준용함
- 내용적 범위
 - 물류시설의 개발·운영에 대한 환경변화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물류시설의 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
 - 물류시설 공급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 도시물류 인프라 공급방안
 -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비·개선 방안
 - 물류시설 첨단화·스마트화 및 효율화 방안
 - 물류시설의 안전·친환경 및 연계수송체계 구축
 -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II. 과업의 주요내용

1. 물류시설의 개발·운영에 대한 환경변화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코로나19,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경제 확산,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기술·정책적 환경변화 분석 및 미래 물류의 방향성을 검토
- 해외 주요국의 물류인프라 공급, 물류 첨단화·디지털화·표준화 등 물류시설 관련 동향을 국내 여건·정책과 비교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물류시설의 규모·입지 등 현황을 분석
 -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물류창고 등 내륙거점 관련 물류시설 및 항만, 공항, 배후단지 등 수출입 거점 관련 물류시설의 현황 파악
 - 물류단지 지정, 물류창고업 등록, 자가물류창고 등의 개발추이 및 물류센터 거래, 공실률, 임대료 등 물류시설 관련 시장동향 분석
-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등 물류정책 방향 분석
 -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 및 한계 분석

2. 물류시설의 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

- 화물 O/D, 택배 O/D 자료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규모별 물동량의 현황·흐름과 전망을 분석
- 물류시설 현황과 시장동향을 고려한 물류시설 수급 전망 분석
 - 물동량 분석을 토대로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 총량을 제시하고 기능별·지역별 세부 물류시설 수요분석
- * 필요 시 물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물류시설 수요분석 모델 제시

3. 물류시설 공급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 생활물류, 폴필먼트 등 서비스·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물류시설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 정책방향, 위계구조, 추진방안을 제시
-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 배치 전략 및 우선순위 제시
 - 수요분석 결과와 민간의 참여를 토대로 물류시설 개발 및 관련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공공주도의 지역별, 기능별(단위시설, 집적시설 및 연계시설) 물류시설 공급 방향을 제시

4. 도시물류 인프라 공급방안

- 물류시설 공급 전망을 토대로 수도권 등 주요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한 도시물류시설 확충 전략 제시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활성화 및 대상지역 확대 방안
 - 기 시범단지로 선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의 활성화 방안(수익성이 저조한 지방지역에 추가혜택 부여 등)을 검토하고, 신도시 등에도 적용 가능한 대상부지 확대 및 미니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 방안 제시
- 유·휴공간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중소형 도시물류시설 공급 방안
 - 도시철도, 고속도로, 철도 등 기존 공공이 보유한 시설 및 부지의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 분석 및 활용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새로운 복합개발 대상 시설 및 방향 제시
 - * 도시철도, GTX 등 역사 개발 현황·계획을 검토하여 복합개발 방향 제시
-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시물류시설 공급 방안
 - 도로구역 내 상하차공간(주거지역, 업무·상업지역 내 도로개설 및 도로접용 허가시 상하차공간 설치 등), 아파트 건축 시 물류공간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소형 물류공간 및 생활물류 기초인프라 확보 방안 검토

5.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비·개선 방안

- 최근 운영률이 저조한 ICD 등 내륙물류기지 운영 활성화·효율화 및 기능개선과 역할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생 방향 제시
- 도심 내 기존 유통·물류시설(전통시장, 일반물류터미널 등)의 복합 재개발을 통한 물류시설 공급 및 추진방안 제시
- 물류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방안과 노후 개별 물류 시설의 선진화 및 소음·교통체증·환경오염 등 개선 검토

6. 물류시설 첨단화·스마트화 및 효율화 방안

- 물류기술 및 R&D 기반 물류시설의 첨단화·스마트화 방안 제시
 - 물류기술, 물류서비스 등에 대한 수준과 동향을 고려하여 자동화, 표준화, 정보화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물류시설의 연계방안 검토
 - 고부가가치 물류혁신 R&D('21~'27) 등 기존 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새롭게 착안·추진해야 할 공공 물류R&D 분야 제시
- 물류시설의 효율적 개발·운영 관련 물류정보화·표준화 방안 검토
 - 산재된 공공정보(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와 민간정보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물류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제시
 -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 물류기능별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화 방안 검토
-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정책 추진방안 검토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중소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 사업 모델 개선 및 공동물류시설 확충 방안 수립

7. 물류시설의 안전·친환경 및 연계수송체계 구축

- 근로자·소비자 보호 및 화물관리를 위한 물류안전 확보
 - 사람(근로자, 소비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물(도난, 파손, 신선도 유지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물류시설의 안전성 확보 추진
 -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재난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시설 및 설비·장비의 안전성 확보 방안 검토
- 친환경 전환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물류시설정책 제시
 - 에너지, 온실가스 등을 저감하는 친환경 물류시설을 보급·확산하고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기능별 친환경 정책과 연계 추진
- 국제물류시설 및 남북한 연계수송체계 전략 제시
 - 항만 및 공항 배후단지 등 국제물류시설의 공급정책과 남북한 관계를 검토하여 물류인프라 및 연계수송체계 구축 방안 마련

8.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미래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수립한 물류시설 정책과 연계한 물류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물류시설 관련 국토·도시·교통 등의 제도·계획과 연계하여 물류거점 시설의 공급 및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친환경 및 안전 기반 물류시설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방안 제시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물류시설의 첨단화·스마트화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규제완화 등 모색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 방안 검토
 -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따른 물류, 경제, 교통, 환경, 안전 등의 파급효과를 검토 및 활용하여 인식변화 제고

III.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 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자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관련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정부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수립중인 각종 계획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발주기관에서 성과품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최종 연구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준공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수지침

가. 성과품 소유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나.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경미한 사항의 과업 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사업정산서 외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CD 및 저장장치 등에 저장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구분	규격	수량	비 고
최종보고서	10절(A4)	100부	관련 파일 1식

IV. 보안 대책

1. 보안서약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처에서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V. 예정 공정표

과업내용	개월수 보합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물류시설의 개발·운영 관 련 환경변화와 사례 분석	15	7	5	2	1								
2. 물류시설의 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	15		2	5	5	3							
3. 물류시설 공급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10			2	2	2	2	2					
4. 도시물류 인프라 공급방 안	10					2	2	2	2	2			
5.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비· 개선 방안	10					2	2	2	2	2			
6. 물류시설 첨단화·스마트 화 및 효율화 방안	10							2	3	3	2		
7. 물류시설의 안전·친환경 및 연계수송체계 구축	10								2	2	3	3	
8.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10									3	3	4	
9. 각종 회의 및 보고서 작 성	10	1	1					2	1			2	3
		착수 보고	자문 회의					중간 보고	자문 회의			최종 보고	각종 심의
합 계(%)	100	8	8	9	8	9	8	9	9	9	8	8	7
누 계(%)	100	8	16	25	33	42	50	59	68	77	85	93	100

VI. 제안 관련 사항

1.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적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평가는 동 계약예규 제7조6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 기술·가격평가의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나. 평가 기준

○ 기술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가방법
제안기관 일반현황 (20)	기관평가 (20)	- 연구인력(석, 박사 등) 보유인력	20	계량평가
과업수행 부분 (80)	제안서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이해	5	비계량 평가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30	"
과업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30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5	"
연구조직 구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
기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5	"
계			100	

* 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관련 연구인력 보유수(20점)

구 분	연구인력 보유수				
	10인 이상 10인 미만	8인 이상 8인 미만	6인 이상 6인 미만	4인 이상 6인 미만	4인 미만
점 수	20.0	18.5	17.0	15.5	14.0

* 물류, 교통, 도시, 경제 등 관련 전공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 비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과업수행부 분	제안서 개요	5	5	4	3	2
	과업 접근방법	30	30	25	20	15
	수행계획	30	30	25	20	15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5	5	4	3	2
	연구조직 구성	5	5	4	3	2
	기 타	5	5	4	3	2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다.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2. 협상 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대상 순위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 점수)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나. 협상 절차 및 내용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 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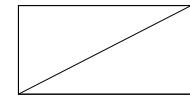
구 분	작 성 지 침	비 고
1. 표 지	○ 과업제안서	서식 제1호
2. 제안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개요 ○ 과업접근방식, 과업수행계획,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연구조직 구성 등 	
3. 일반현황	○ 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2호
	○ 관련 연구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3호
	○ 본 과업 참여 연구인력 현황	서식 제4호
4. 기타	○ 청렴서약서	
5. 별첨자료	○ 증빙자료	

3.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 보장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조건
 - 제안사업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비용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 제안서 설명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저작권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 기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책임자(PM) 등 주요 용역수행인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용역수행인력을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제안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용역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과업 제안서

용역명 :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침단물류과(044-201-4013, 4008)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기관명 : (인)

〈서식 제2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18년	2019년	2020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정계사항			

〈서식 제3호〉

관련 연구인력 보유 현황

본 과업 참여 연구인력 현황

분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학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꼬리에 첨부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0000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위 서약인 성명 : (서명 또는 일)

확인자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칙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